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무원이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 대상을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지원을 의무화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적극행정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원의 임기 및 연임 제한, 해촉 규정을 신설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을 추가함으로써 공직사회 내 규제 혁신을 장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송 등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 의무화(안 제11조, 제18조)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 대상을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지원을 의무화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보호 강화

나.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임기·연임·해촉 규정 마련(안 제12조, 제12조의 3, 부칙)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2년) 규정 및 연임 제한(2회) 규정을 마련하고, 심신장애·비위사실·직무 태만 등의 경우에 대한 해촉 규정을 신설

다. 규제혁신 우수공무원 적극 발굴 추진(안 제14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9. 30. ~ 11. 9.) 예정

3) 행정규제 : 생략

대통령령 제 호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8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위원의 해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을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무원”을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두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적극행정위원회) ① (생략)	제11조(적극행정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 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4. 제18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항
4. (생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설></u>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 ⑦ (생략)	⑤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⑨ ----- 제8항----- ----- -----.
<u><신설></u>	제12조의3(위원의 해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야 한다.	제14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u><신설></u>	2.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2.·3. (생략)	3.·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② ~ ④ (생 략) 제18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u>할 수 있다.</u> 1. 2. (생 략)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u>할 수 있다.</u> ④ (생 략) <u><신 설></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공무원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 해야 한다. 1. 2. (현행과 같음) ③ -----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 해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내용, 지원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	
연 락 처	(044) 201 - 8501